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82
----------	------

제출일자 : 2023. 10. 16.

제 출 자 : 달성군수



##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7조의2)

- 존속기한 : 2024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5년)

## 3. 조례안 : 따로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 2023. 9. 13. ~ 10. 3.(20일간)

(가) 예고결과 : 2023. 9. 26. 의견 접수(1건)

- 의견내용

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근거 법령 표기

- ② 특별회계의 기한을 규정하기 위한 부칙 내용 수정
  - 의견반영 검토 결과
    - 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근거 조례 표기(의견 반영)
    - ② 현 특별회계의 기한(5년)을 규정하기 위해 부칙 내용 수정(의견 반영)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미첨부 사유서)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 신 설 &gt;</p>	<p>제7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용 발생 관련 조문**

- 조례안 제7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 단순 일몰조항 기한 연장 및 명칭 정비

**4. 작성자 : 청소위생과 청소행정팀장 문현호**